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5년 8월 26일

발 의 자 : 이범윤 의원 외 7인

제안이유

-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(환경부령 제179호, '05.7.22)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제명을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
- 국립환경연구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
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~~을~~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으로 함(안제3조제1항)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□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□를 □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□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□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□을 □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□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검사, 시험 등의 수수료는 “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 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”와 □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□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,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----- ----- ----- -----□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□----- ----- -----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보건환경연구원법

제8조 (수수료 등)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18953호, '05.7.22)

제2조 (소속기관) ①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을 둔다.

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(대통령령 제18953호, '05.7.22)

부칙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□을 □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□으로 한다.